

의안번호	2219514
의 퇴 인	문대림의원
회 답 일	2026.9.18.
추계번호	26D3073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35조의2 (도민의 항공교통 이용 보장 및 지원)	-도지사는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항공노선 이용에 필요한 지원, 항공운임 및 요금의 할인·환급·바우처 지급 등을 통한 부담 완화, 항공교통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 -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35조의2(도민의 항공교통 이용 보장 및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(안 제43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도민의 국내항공노선 이용에 필요한 지원, 항공운임 할인·환급·바우처 지급 등을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, 현재는 항공사별 항공요금 자체 할인 외 국가 또는 도 차원의 별도 재정 지원은 없는 상황임

<제주도민 등에게 제공되는 국내 항공요금 자체 할인 현황>

구 분	제주 항공		진 에어		이스타 항공		에어 케이	트리니티 항공		에어 부산	에어 서울	아시 아나	대한 항공	제주 항공
제주 도민	평수기	25 %			주중	30 %	15%	비수기	20 %	10%	금요일 성수기 제외 10%	10%	10%	
	성수기	15 %			주말	15 %		주말/ 성수기	5%					
					성수기 /탄력 할증	5%								
명예 도민 및 배우자	평수기	25 %	연 중	10 %	주말, 성수기 탄력 할증 제외	30 %	15%	비수기	20 %	10% 주말, 성수기 제외	10% 주말, 성수기 제외	10%	10%	
	성수기	15 %						주말/ 성수기	5%					
제외 제주 도민	주중 (배우자 직계 비속 포함)	15 %						비수기	20 %					
제주 4·3 생존 희생자 본인	연중	50 %					40%							
제주 4·3 희생자 유족		40 %					30%							

자료: 제주특별자치도

-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6월 「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제주 기점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같은 해 8월 「제주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TF」를 구성하여 좌석·요금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임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항공운임 및 요금 할인·환급·바우처 지급 등 세부 지원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